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숙박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면제 요건 추가〉
■ 한지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03543호)

2024. 11.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숙박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면제 요건 추가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지아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9. 2.
3. 회 부 일 : 2024. 9. 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거나 고용해 이득을 취득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경우에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에게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면책 규정이 마련돼 있음.

그런데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이러한 면책 규정이 없어 과징금 부과처분의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숙박업자 등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숙박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면제 요건 추가

개정안은 숙박업자가 관계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 등)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4조(과징금) ①·② (생략)	제54조(과징금)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59조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58조제1호·제3호·제4호, 같은 조 제5호(제30조제8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 ----- ----- ----- ----- ----- -----.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현행법¹⁾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제5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4항²⁾에서는 제58조

1)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③ 제2조제5호나목2)의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등을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제8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④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나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이나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이하 이 항에서 “증표”라 한다)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증표 제시를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그 업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제54조(과징금)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59조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30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2)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

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59조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해당 업주가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상 과징금 부과 면제 요건 관련 규정 현황 >

제54조(과징금)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5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영업허가 취소, 영업소 폐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8조제1호·제3호·제4호 또는 제59조제6호·제8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행위자로 하여금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한 사정 또는 행위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5)의 청소년유해악물 또는 같은 호 나목1)·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4.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과징금 부과·징수 대상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 또는 불기소(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다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 한다.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

8.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킨 자

제16조(판매 금지 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9조(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등) 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이처럼 과징금 부과 면제요건을 두고 있는 이유는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및 청소년유해물건 등을 판매·대여하는 업에 종사하거나,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업주가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 등)로 인하여 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주의 부담을 완화해 주려는 취지임.

그런데,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와 종사자가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청소년이 악의적으로 신분증을 위·변조 또는 도용하여 사용하거나 청소년의 폭행·협박 등으

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해 남녀 혼숙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면제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숙박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숙박업자 등이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청소년이 악의적으로 신분증을 위·변조 또는 도용하여 사용하거나 청소년의 폭행·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참고로, 2024.10.22.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³⁾되어 청소년이 위조·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숙박업자 포함)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2025. 4.23. 시행)이 신설되었음.

개정안에 대하여 여성가족부는 현행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 등)로 인한 사업주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숙박업의 경우에도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로 인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를 면제하여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한 숙박업자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3) 「공중위생관리법」(법률 제20504호)

있다고 보이는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5

개정전(「공중위생관리법」)	개정후(「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20504호)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해당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8.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의료법」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 신 설 >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 ①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신분증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2. 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